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7.12.05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동작구 노량진동 294-220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17-33-2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 분야 〉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			
○ 공공보행통로는 보행 안전과 남북의 녹지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차부에서 램프, 승강기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기 바람. - 공공보행통로의 남북 간 종단면도를 제시 바람.			
○ 노량진1촉진구역의 녹지와 공공보행통로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입체보행 데크나 횡단보도 등 설치계획을 검토 바람.			
○ 공공보행통로와 필로티 공간이 일체화되고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하기 바람.			
○ 동·서측 보행로가 서측 보행자 우선도로와 계단, 경사로 등으로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계획하기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○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계단실 출입문은 패닉바를 적용하기 바람.			
○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계획은 법적 최소기준의 적용이 아니므로 조치계획을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.(‘유관기관과 협의 반영하겠음’ 문구 지양)			
○ PD/AV공간은 실제 시공 가능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.			
○ ‘주차장 환기설비를 화재 시 배연기능 활용’과 관련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재검토하여 적용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			
○ 지하3층, 지하4층 주차장에서 108동 앞의 기형적인 사거리와 삼거리 교차로가 인접하게 배치되어 있는 통로를 폐쇄하여 불합리한 차량 간 상충이 없도록 조치 바람. 끝.			

2017.12.0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